

제 158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거 창 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09 - 9
----------	----------

제출년월일 : 2009. 3. 27
제안자 : 거창군수

1. 사유

- 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협소 및 노후로 인해 충혼탑 인근 죽전근린공원 예정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마련
- 관내 미활용 폐교 매입을 통해 기업체 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저렴한 이용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우리군의 가조면 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및 체험장 3동 신축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 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연면적)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사업비)	비고
계		4 건		533,611	11,970,840	
청소년수련관 신축	건물	거창읍 가지리 272-1번지의 5필지	건물	2,785	5,187,000	
폐교부지 매입	토지/ 건물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의 19필지	계	81,561	2,349,801	하성초등 학교 외 5개소
			토지	74,967	1,860,174	
			건물	6,594	489,627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매입	토지	가조면 도리 산43번지의 6필지	토지 (임야 7)	446,000	143,412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건물	거창읍 장팔리 산5-1번지의 3필지	건물	3,265	4,290,627	

※ 상세 토지 내역 붙임 참조

3.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², 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비고
		해 당 없 음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5. 전경사진 및 지적도 ⇨ “따로 붙임”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취득목록

회 계 명	일반회계
-------	------

① 청소년 수련관 신축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비 고
	구분	건축물 현황	연면적					
계			2,785	5,187,000				
1	건물	거창읍 가지리 272-1번지의 5필지 ▪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2,785	5,187,000	2011	청소년 수련관 신축	거창군	죽전근린 공원부지내

② 폐교부지 매입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81,561	2,349,801				
1	토지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 외 4필지	14,654	400,545	2009	폐교매입	경상남도 (교육감)	하성초
	건물	웅양면 한기리 915	1,064	39,588	"	"	"	
2	토지	남하면 지산리 906번지 외 1필지	8,687	237,156	"	"	"	남하초 지산분교
	건물	남하면 지산리 906	726	77,688	"	"	"	
3	토지	신원면 양지리 284-1번지 외 4필지	7,929	214,888	"	"	"	율원초
	건물	신원면 양지리 284-1	794	116,051	"	"	"	
4	토지	가조면 기리 535-1번지 외 3필지	17,847	246,870	"	"	"	석강초
	건물	가조면 기리 535-1	1,251	76,017	"	"	"	
5	토지	가북면 우혜리 1955번지 외 2필지	14,953	640,848	"	"	"	가조중 가북분교
	건물	가북면 우혜리 1955	1,392	143,182	"	"	"	
6	토지	가북면 용암리 1967	10,897	119,867	"	"	"	가북초 용암분교
	건물	가북면 용암리 1967	1,367	37,101	"	"	"	

③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매입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7필지	446,000	143,412			
1	토지	가조면 도리 산43	46,347	11,355	2009	골프장 조성부지	최경자 친환경 대중골프장 예정부지
2	"	가조면 도리 산44	89,058	21,819	"	"	이원진
3	"	가조면 도리 산45	158,579	79,765	"	"	이상우
4	"	가조면 도리 산47	298	79	"	"	이동주
5	"	가조면 도리 산57	27,273	6,682	"	"	거창군 산림조합
6	"	가조면 도리 산59	1,091	398	"	"	김두성
7	"	가조면 도리 산60	123,354	23,314	"	"	홍해최씨평 촌공파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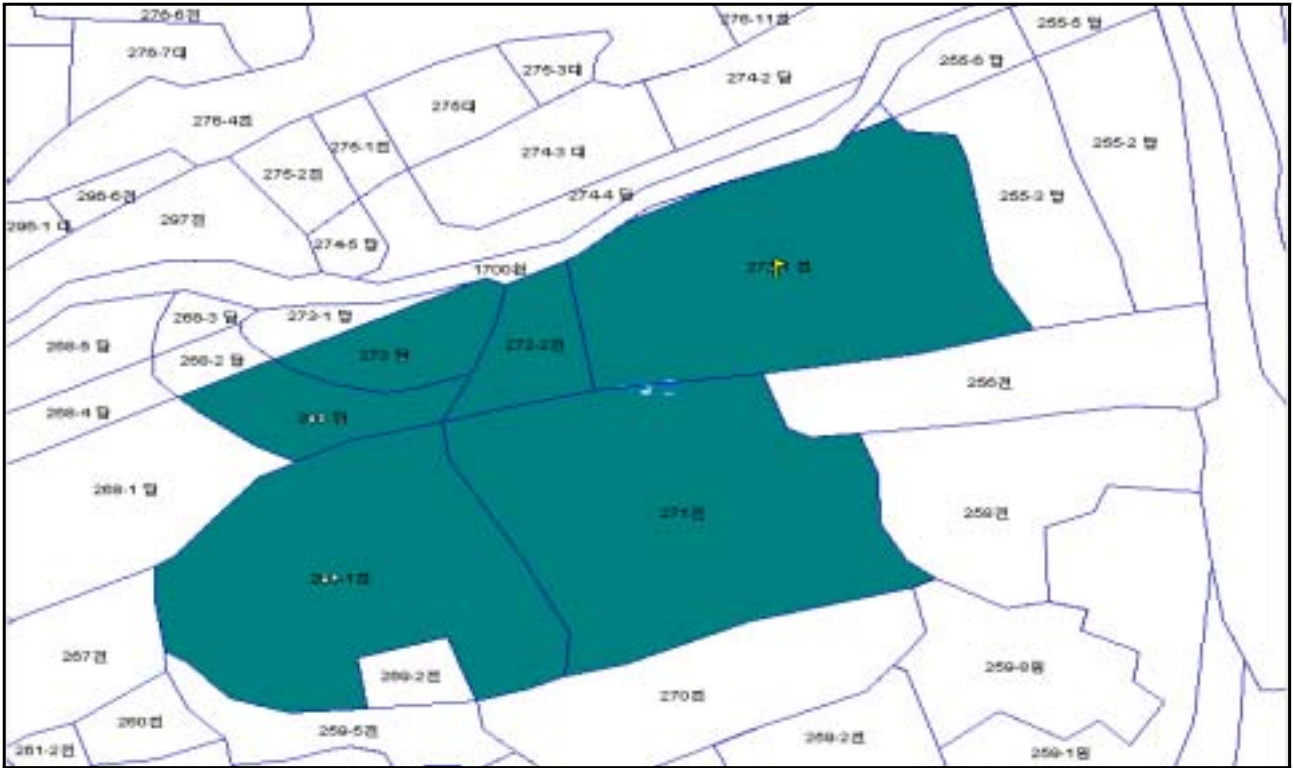
④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비 고
	구분	건축물 현황	연면적					
계			3,265	4,290,627				
1	건물	거창읍 장팔리 산5-1번지의 3필지 ▪ 문화원사 : 지하 1층/ 지상 3층 ▪ 전수회관 : 지하 1층/ 지상 1층 ▪ 체 험 장 : 초가집 3동 ▪ 용 도 : 공연장, 체험장 등	3,265	4,290,627	2010	문화원사, 전수회관, 체험장 신축	거창군	복합문화 단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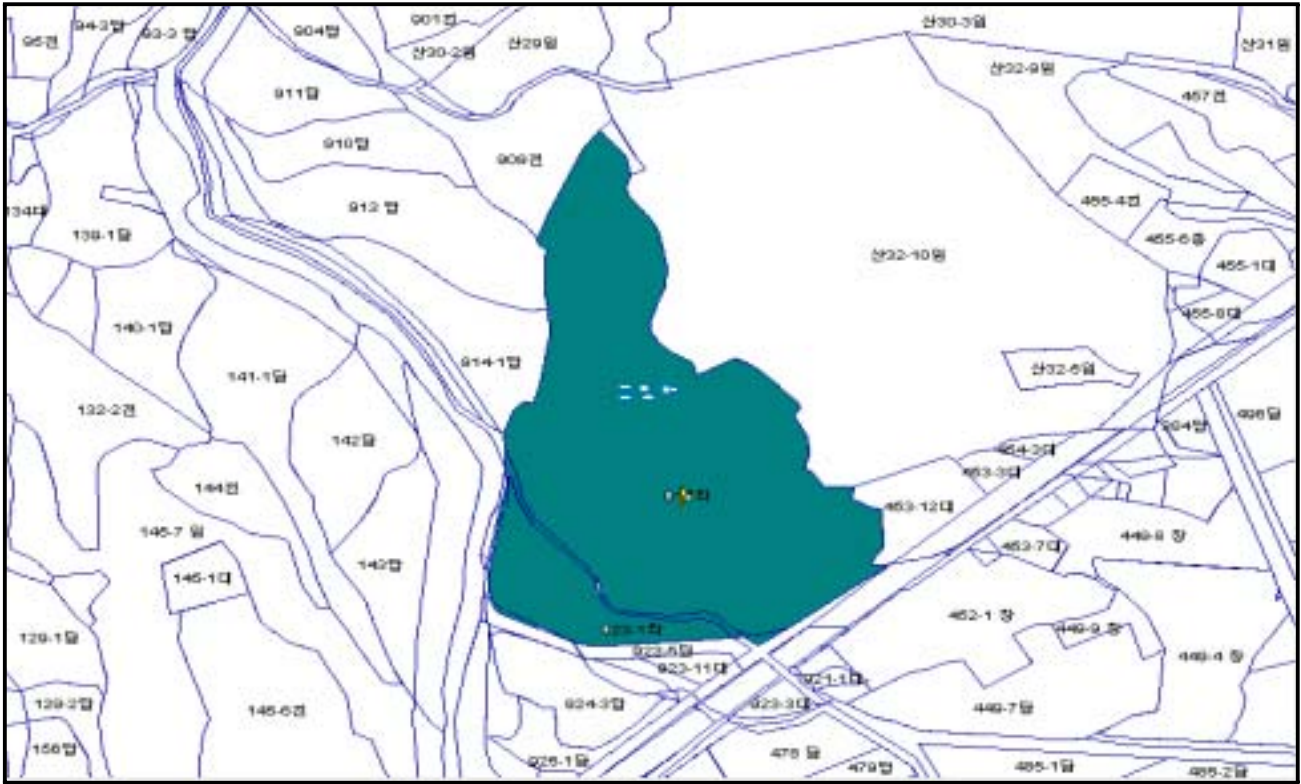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읍 가지리 272-1번지와 5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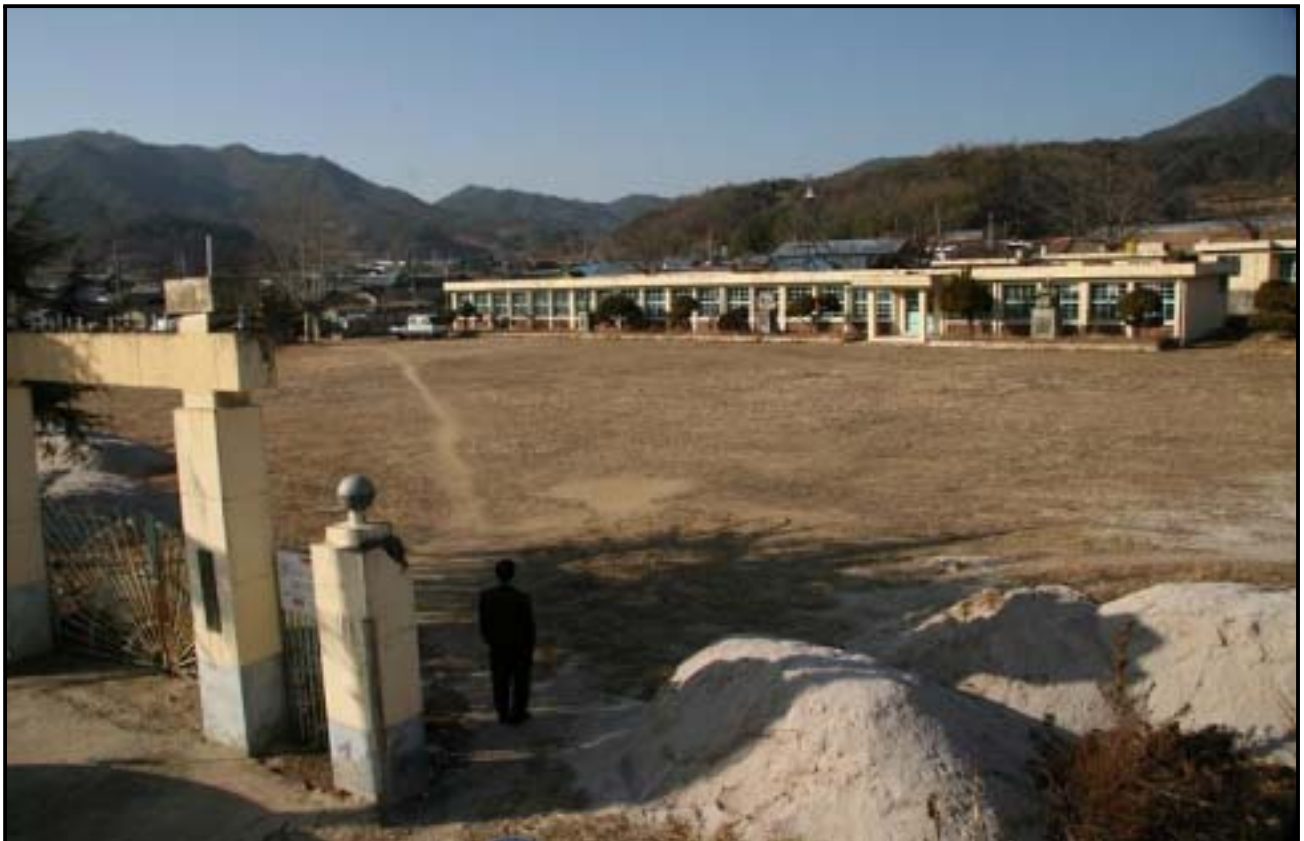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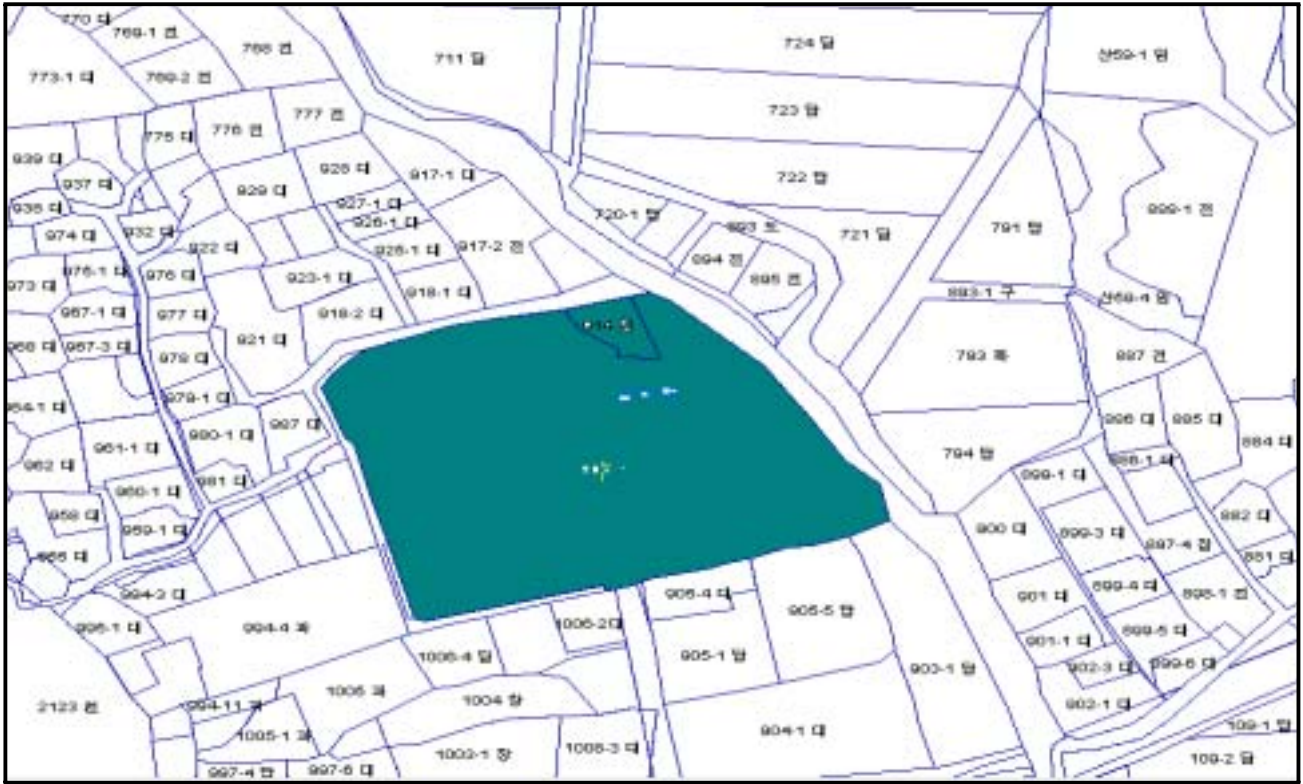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용양면 한기리 915번지외 4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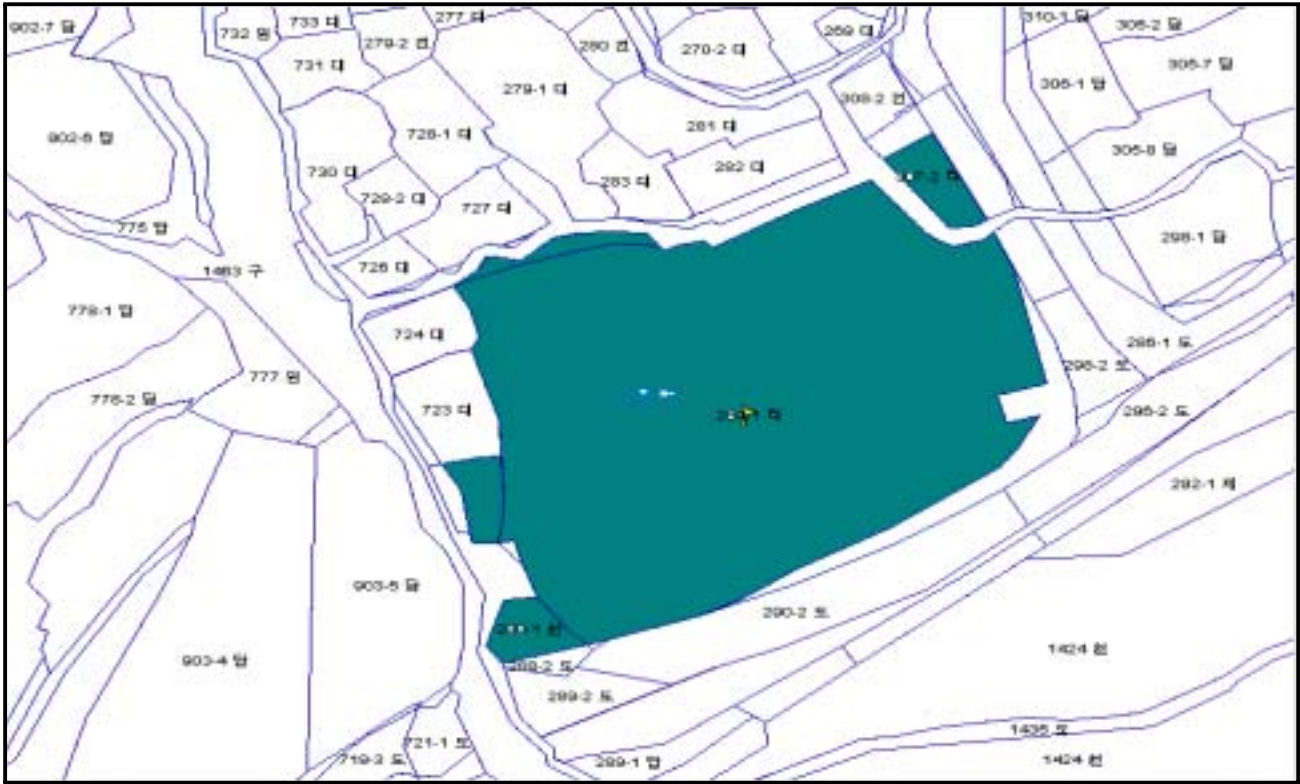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남하면 지산리 906번지외 1필지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신원면 양지리 284-1번지외 4필지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가조면 기리 535-1번지와 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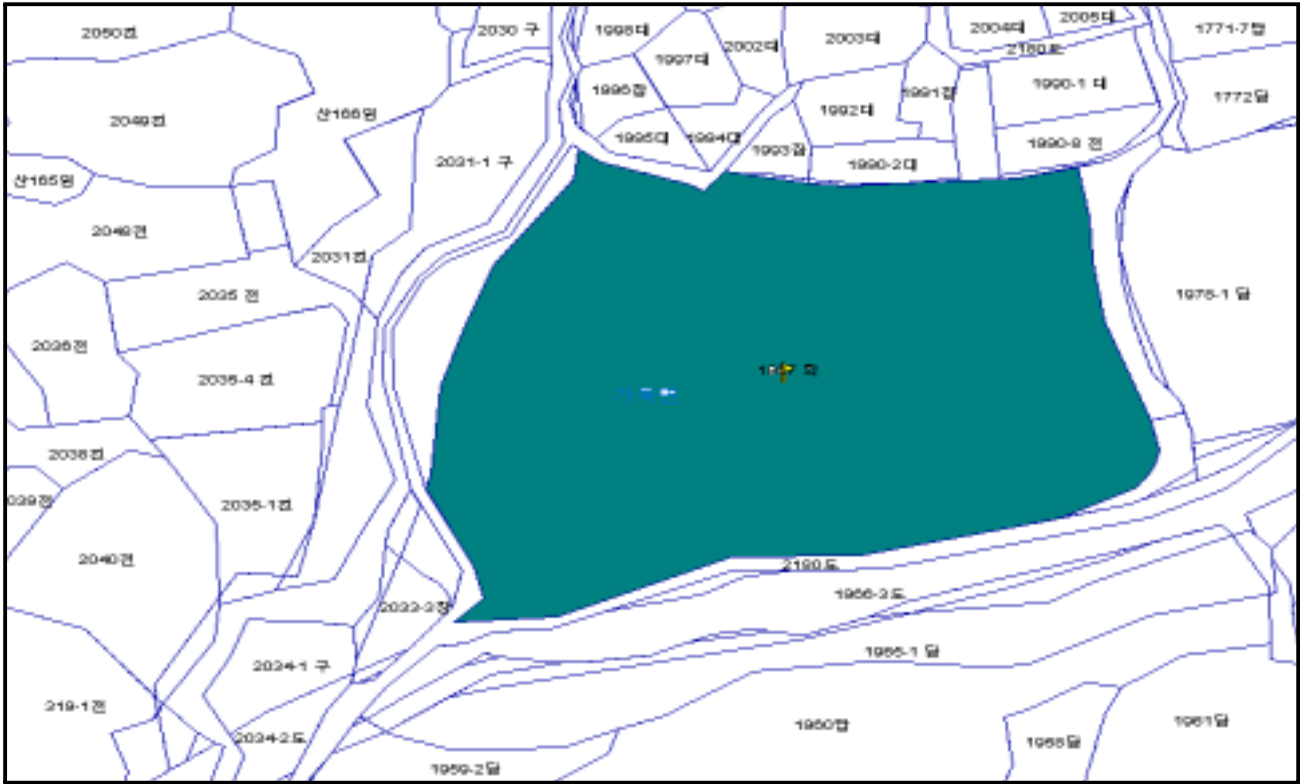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가북면 오혜리 1955번지외 2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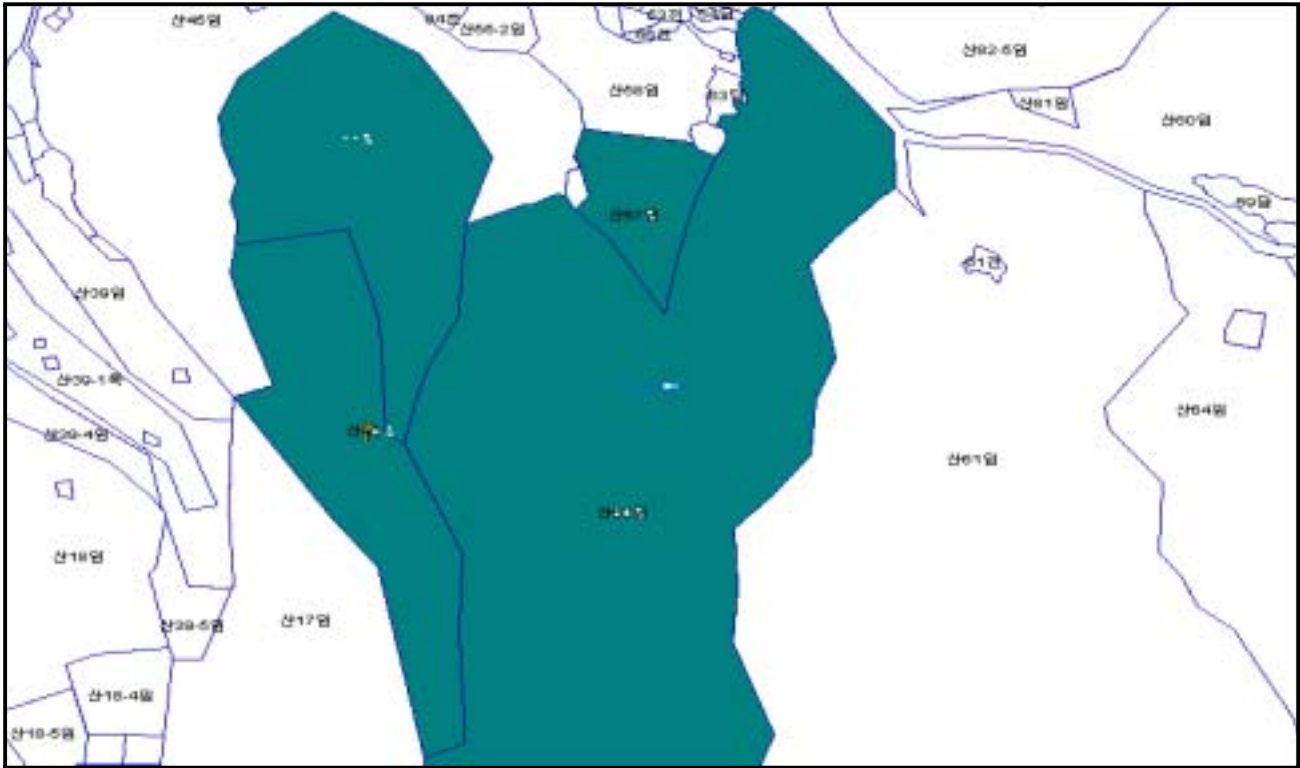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가북면 응암리 196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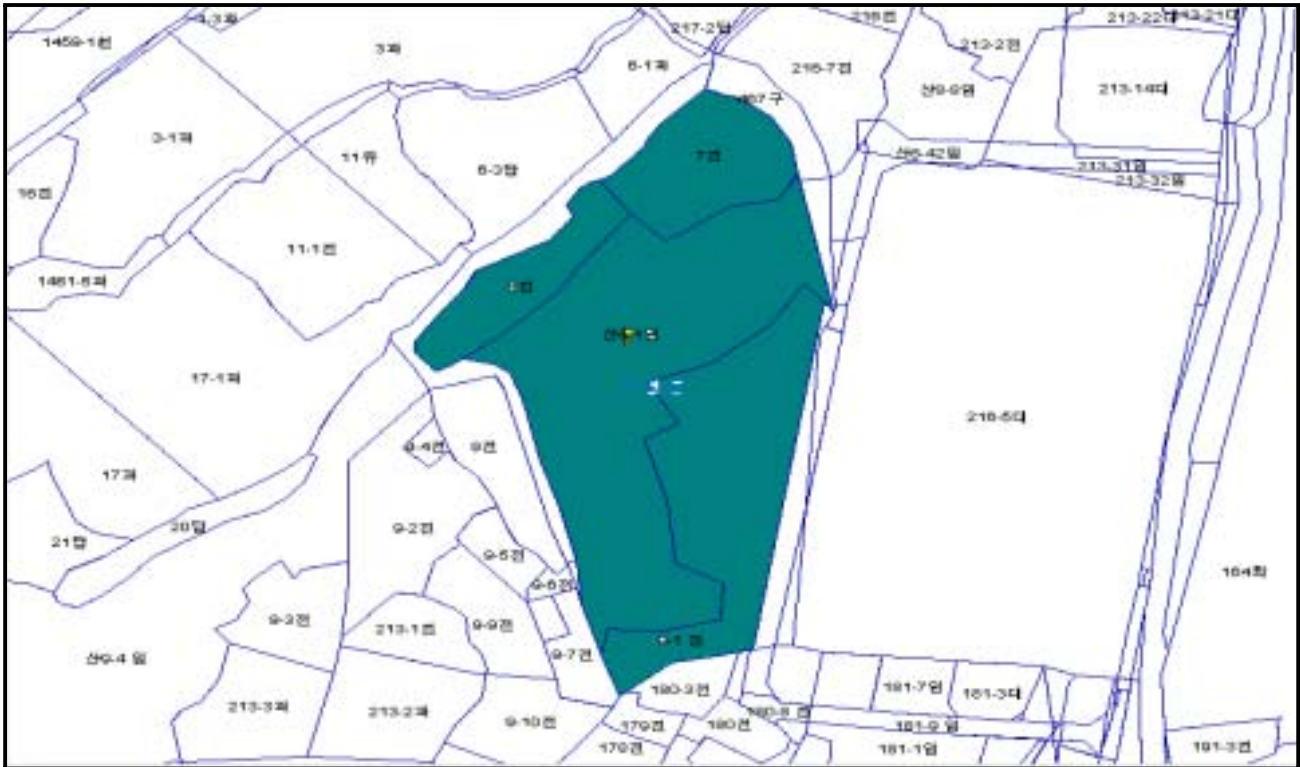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43번지외 6필지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읍 장팔리 산5-1번지외 3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8.4.18, 2008.12.31>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18, 2008.12.31>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삭제 <2008.4.18>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 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 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